

전자상거래 확대에 따른 특송물품 수입통관시스템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Improvement of Import Clearance System for Express Consignments by
Increase of Electronic Commerce

송선욱(Seon-uk Song)

한국관세사회 상임연구위원, 경제학 박사

목 차

- | | |
|---------------------------------|-------------------------------------|
| I. 서 론 | IV. 한국 특송물품의 수입통관시스템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 |
| II. 전자상거래의 확대와 특송물품의 통관 | V. 결 론 |
| III. 한국 특송물품의 수입통관시스템에 대한
분석 | 참고문헌 |

Abstract

Recently, Electronic commerce market is growing sharply for the expansion of internet and development of means of air transportation.

Import Clearance System for express consignments, introduced in Korea, confers some benefit upon express consignments, ie. prompt clearance, simplification of the clearance procedure, exemption of necessary documents.

But it has some problems such as lack of social security and trade compliance.

So it requires some improvements as follows.

Firstly, it has no legal background to clear all articles valued at US\$100 or less carried by an express consignment operator. So customs brokers, not express consignment operators, should clear that articles.

Secondly, it should be presented necessary documents including commercial invoice to prevent a wrong price declaration in entering express consignments valued at US\$100 or less.

Thirdly, X-ray inspectors must enhance their inspection ability. Customs must provide education programs for X-ray inspectors to improve their inspection ability.

Lastly, Cargo selectivity system for express consignments have to be improved to operate effectively.

Key Words: Express Consignment, Import Clearance, Courier Express

I. 서 론

최근 인터넷의 확산과 항공운송수단의 발달로 전자상거래가 도입되어 급성장하고 있다. 그에 따라 다품종 소량화물, 즉 특송물품에 대한 국제운송수요가 급증하고 있으며 이러한 운송수요를 담당하는 특송업체 또한 발전하고 있다.

특송물품은 과거 단순한 상업서류 등의 비교적 중량이 가볍고 저가의 소포 수준이었으나 최근에는 그 범위가 확대되어 거의 모든 종류의 물품이 특송물품으로 국제운송되고 있는 현실이다.

이러한 국제특송물품의 경우도 반드시 경제적 국경인 관세선을 통과하는 통관이라는 절차가 필요한데 급증한 특송물품을 일반물품과 동일한 통관절차를 통해 통관할 경우 신속통관과 효율적 화물관리에 저해가 있어 별도로 특송물품의 통관을 위한 절차를 마련하고 있다.

이를 반영하듯 WCO에서는 이렇게 급증하고 있는 특송물품의 신속통관과 적절한 관리를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Guidelines for the Immediate Release of Consignments by Customs'를 제정, 채택하여 각국에 권고하고 있다.

그러나 특송물품에 대하여 신속성만을 강조한 나머지 사회안전성 확보 및 적법성 확보에 소홀하게 되어 위해물품등의 반입 및 세액탈루 등의 문제점을 야기시키고 있다.

한국의 경우도 2003년에 특송물품수입통관사무처리에 관한 고시를 제정하여 특송물품의 통관 편의를 도모하고 있으나 효율적인 특송물품 관리에 여러 가지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어 이에 대한 개선이 절실하다.

따라서 본 연구는 특송물품 수입통관시스템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그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여 특송물품 통관의 효율적 관리가 이루어지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WCO에서 제시한 즉시 반출가이드라인, 그리고 미국, 일본의 특송물품 수입통관시스템과 한국 특송물품 수입통관시스템을 비교하여 한국 특송물품 수입통관시스템을 분석하고 그에 대한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제시하도록 하겠다.

II. 전자상거래의 확대와 특송물품의 통관

1. 전자상거래의 확대와 특송물품

정보기술(IT)의 급속한 발달과 확산에 따라 전자상거래가 급속히 증가하고 있다. UNCTAD(유엔무역개발회의)는 2003년 인터넷을 이용한 세계 전자상거래 규모가 최대 3조8천700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전망했다.¹⁾ 그리고 Forrester Research는 전세계 전자상거래 시장규모가 2000년에 6천570억 달러에서

1) 한국전산원, 「e-비지니스 주요통계」, 2004.4.30, p.2.

2003년도에는 6배 이상 증가한 3조9천797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며 2004년도는 6조7천898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하였다.²⁾

이 같은 세계 전자상거래시장의 급속한 성장과 전망은 한국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되고 있다. 즉, 한국의 경우 전자상거래액이 2000년에는 57조5천억에서 2003년에는 4배 이상 증가한 235조250억 원으로 집계되었으며 총거래액에서 전자상거래가 차지하는 비중도 2000년에는 4.5%에서 2003년에는 16.7%에 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정보기술을 기반으로 급성장하고 있는 전자상거래를 완벽하게 실현하기에는 기존의 정책 및 상관습의 대부분이 장애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 그 가운데 운송에 관련된 물류부분도 예외는 아니어서 보다 체계화, 통합화, 정보화되지 않으면 효과적으로 전자상거래시대에 대응할 수 없게 될 것이다.

이에 따라 물류수요의 특성이 보다 소량, 다품종, 다빈도, 정시화되는 특성을 띠는 전자상거래환경에서 특급배송업체에 의한 택배, 소포 등의 소화물 운송시장, 즉 특송물품의 시장이 새롭게 급성장하고 있다.

특송물품은 일반적으로 특송업체가 운송하는 물품을 의미하는데 특송업에 대하여는 특별히 국제적으로 통일된 용어정립이 되어 있지 않은 상태로 국제항공택배업, Courier Express, Air Express 등으로 사용되고 있다.

원래, 국제택배업과 특송화물운송업과의 차이는 국제택배업이 택배업자 혹은 상업서류송달업자인 포워더들의 사업인 반면, 특송화물운송업은 항공사의 운송사업이었으나, 국제택배업자들이 항공운송업을 겸하는 통합 캐리어가 되고, 특송화물운송업자들은 airport-to-airport에서 door-to-door 서비스를 제공함에 따라 통상 같은 개념으로 사용되고 있다.³⁾

한국의 경우 상업서류송달업이라 하여 항공법 제2조 33항[일부개정 2003.12.30 법률 제07024호]에서 “상업서류송달업”이라 함은 타인의 수요에 응하여 유상으로 우편법 제2조제2항⁴⁾ 단서의 규정에 해당하는 수출입등에 관한 서류와 그에 부수되는 견본품을 항공기를 이용하여 송달하는 사업으로 정의하고 있다.

또한 관세청 고시인 특송물품수입통관사무처리에 관한 고시[관세청고시 제2004-16호, 2004.3.25.] 제1-2조 1호에서 특급탁송업체라는 개념을 정리하고 있는데 특급탁송업체(특송업체)는 상업용의 속달서비스에 의하여 상업서류 기타 견품 등을 송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로 통관지 세관장 또는 관할지 세관장에게 등록을 한 업체를 말한다. 특송업체로 통관지 세관장 또는 관할지 세관장에게 등록할 수 있는 업체는 항공법 제13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업서류송달업의 신고를 필한 업체(외국무역기를

2) 산업자원부 전자상거래과, “산업자원통계 15.전자상거래 동향”, 2004.4.13.(www.mocie.go.kr)

3) 김제철·예충열, 「항공화물수송부문의 경쟁력 강화방안」, 교통개발연구원, 2002.11, p.60.

4) 우편법[일부개정 2000.1.21 법률 제06196호] 제2조 2항

누구든지 第1項 및 第4項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타인을 위한 신서의 송달행위를 업으로 하지 못하며, 자기의 조직 또는 계통을 이용하여 타인의 신서를 전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용하는 업체에 한한다)와 관세법 제225조의 규정에 의한 화물운송주선업자의 신고를 필한 업체(외국 무역선을 이용하는 업체에 한한다)로 제한되어 있다.

또한 동 고시 제1-2조 2호에서 특급탁송물품(특송물품)은 특송업체에 의하여 수입되는 물품을 의미한다고 정의하고 있다.

2. 특송물품의 증가와 수입통관시스템

국제특송시장은 1992년 이후 연평균 24%의 고성장을 하고 있고, 향후 2019년까지는 연평균 13%의 성장이 예상됨에 따라 전체 항공화물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1999년 9.2%에서 2019년에는 31%로 증가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⁵⁾

한편 국내 특송시장은 연평균 20%~30%의 성장을 보이고 있으며 각 주요업체의 매출을 조사한 결과 1995년 1,000억원을 밑돌던 국제특송시장 규모가 2000년에는 약 3,220억원 정도로 추산되었으며 장래 2006년에는 시장규모가 1조원대에 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⁶⁾

이렇게 급증하고 있는 국제특송물품 즉, 다른 국제화물에 비해 상대적으로 다품종, 소량, 소액, 다빈도 화물인 국제특송물품에 대하여 통관부문에 있어서도 신속, 정시운송에 도움을 줄 뿐만 아니라 적절한 화물관리를 위한 특별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WCO(세계관세기구)에서는 주로 특송업체와 EMS에 의해 운송되는 다수의 소량 또는 저가 상품의 통관을 신속하게 하여 세관과 무역업계에 도움을 주기 위해 1990년 초에 즉시 반출과 같은 적송품을 위한 적절한 관리를 위해 현행 관습에 기초한 일련의 절차상의 가이드라인을 발전시켜 왔다. 이 가이드라인은 개정교토협약과 Data Model, 세관과 무역업계에 관련된 기타 이슈들의 발전 결과 개정되어 WCO 영구기술위원회(Permanent Technical Committee)에 의해 2003년 3월에 'Guidelines for the Immediate Release of Consignments by Customs'가 채택되어 각국 세관에 권고되고 있다.⁷⁾

한편 한국에서도 특송물품 시장이 확대되고 있으며 이들에 대한 중요성과 관심도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를 반영하기 위해 2003년 1월 22일 '특송물품 수입통관사무처리에 관한 고시'를 제정하여 특송물품의 수입통관시스템을 별도로 마련하여 제도상의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III. 한국 특송물품의 수입통관시스템에 대한 분석

1. WCO 즉시반출가이드라인과의 비교를 통한 분석⁸⁾

5) Waiman Cheung, et al., *Increasing the Competitiveness of the Air Cargo Industry in Hong Kong*, IFT Report SSP/48/00, April 2002.; 김제철 · 예충열, 전자자료, p.60.

6) 김제철 · 예충열, 전자자료, p.61.

7) <http://www.wcoomd.org>(Immediate Release Guidelines)

1) 작성목적 및 상호협정 체결

한국 특송물품의 수입통관시스템에 대하여 분석하기 위하여 WCO 즉시반출가이드라인(이하 '즉시반출가이드라인'이라 함)과 특송물품 수입통관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이하 '특송물품 고시'라 함)를 비교, 분석하도록 하겠다.⁹⁾

먼저 즉시반출가이드라인과 특송물품 고시의 작성목적은 동일하게 특송물품의 신속통관에 있으며 이를 위해서 적송품의 적절한 분류, 신속통관에 따른 물품관리상의 문제를 보완하기 위한 위험관리기법의 활용 등을 규정하고 있다.¹⁰⁾

한편 적송품의 신속반출/통관과 같은 세관의 편의제공은 운송업자와의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세관과 운영업자(operators)¹¹⁾ 사이의 협약 또는 계약을 통해 즉시반출가이드라인을 이용하도록 하고 있으며¹²⁾ 특송물품 고시에서도 세관과 특송업체간의 협정체결을 통해 통관업무를 처리하도록 하고 있다. 그리고 세관과 특송업체 사이의 협정 체결의 내용이 세관에 대한 특송업체의 책임, 통관장 등의 시설에 관한 규정, 제한·금지품 등에 대한 상호협력, 신속통관을 위한 절차, 기타 필요한 내용으로 거의 비슷한 내용을 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구체적으로 즉시반출가이드라인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국가차원이나 지역 차원에서 운영업자와 세관사이에 양해각서(MOU)와 같은 협정을 체결하도록 권유하고 있다.¹³⁾

① 세관을 상대로 한 운영업자의 일반적 책임 규정, ② 적송품의 반출/통관을 위한 세관신고서의 성격 규정, ③ 적송품의 반출/통관을 위해 지정된 장소나 구역의 안전을 유지하기 위한 세관과 운영업자 사이의 협력 제공, ④ 제한품, 금지품, 상업적인 사기, 마약밀수 금지의 협력 제공, ⑤ 관련된 세관 요구사항 즉, 특별 또는 추가적 서비스에 대한 지불, 재정적 보증의 제공, 사전정보 또는 서류의 준비를 운영업자가 준수하는 한 용이하고 신속한 적송품의 세관 반출/통관절차의 제정, ⑥ 세관에 의해 수락 가능한 그리고 설정하기에 충분한(예를 들어 가격, 내용물, 송화인, 수하인) 문서제시 또는 그것의 전자적 형태의 동등물 확인, ⑦ 만약 필요하다면 적송품의 반출/통관을 위해 지정된 장소에서 세관이

8) 우편물의 경우 WCO 즉시반출가이드라인에서는 규정하고 있으나 한국의 경우 관세법과 수입통관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에 반영되어 있고 특송물품수입통관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에는 규정되어 있지 않음으로 본고의 주제를 우편물을 제외한 특송물품으로 제한하고 있으므로 본 고에서는 논외로 한다.

9) WCO 즉시반출가이드라인은 각 세관당국이 적용할 수 있는 적송품의 즉시반출을 위한 기본원칙을 제시하되 각국의 법률 등 상황에 따라 상이한 요구사항과 절차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WCO 즉시반출가이드라인을 한국의 특송물품의 통관과 관련된 규정인 특송물품수입통관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에 그대로 적용할 필요는 없으나 기본적인 원칙과 지침으로 활용할 수 있음으로 비교검토하도록 하겠다.

10) WCO, Guidelines for the Immediate Release of Consignments by Customs(IRG-Version, 9/10/2002), 1. Introduction.; 특송물품수입통관사무처리에 관한 고시(관세청 고시 제2004-16호, 2004.3.25.), 제1-1조(목적)

11) WCO, Guidelines for the Immediate Release of Consignments by Customs(IRG-Version, 2002. 10), 2.1. 관련 국제법령에 따라, 이 가이드라인은 그러한 반출을 요구하는 모든 적송품에 중량, 가격, 크기, 운영업자나 운송인(즉, 특송업자, 항공사, 선사, 포워드, 우편송달업자)의 형태, 운송형태(복합운송을 포함한)에 관계없이 평등하게 적용된다. 이 가이드라인에서 그런 적송품을 운송하는 모든 서비스는 운영업자(operators)라고 규정한다.

12) WCO, Guidelines for the Immediate Release of Consignments by Customs(IRG-Version, 9/10/2002), 16.1.

13) WCO, Guidelines for the Immediate Release of Consignments by Customs(IRG-Version, 9/10/2002), 16.2.

작업하기 위해서 대지 또는 기타 시설을 제공받는 것의 보장, ⑧ 그 협정의 수정이나 파기를 계획하고 있다면 협정으로 상대방에게 정시에 통지되는 것을 제공하기 위하여 상호협정을 맺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협정은 국내 법률에 협정이 법적으로 모든 당사자를 구속한다는 방식으로 적용 가능하다.

특송물품 고시에서는 세관에 대한 특송업체의 책임사항, 통관장 또는 특송물품 운송시설에 대한 설치·운영 및 폐지에 관한 사항, 밀수 및 부정무역 방지를 위한 협력(마약, 총기 및 기타 밀수 등), 법규에서 정한 범위내에서 특송물품의 신속통관을 위한 절차 개선, 기타 세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특송업체가 협의할 것을 요청한 사항을 협정내용으로 하여 세관과 특송업체 사이에 협정을 체결하도록 하고 있다.¹⁴⁾

2) 통관을 위한 적송품의 분류

세관이 즉시반출 및 통관에 필요한 자료와 적용할 수 있는 정확한 절차를 결정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즉시반출가이드라인과 특송물품 고시에서는 <표 1>과 같이 적송품을 구분하고 있다. 즉, 즉시반출 가이드라인은 서신 및 서류(Category 1 - Correspondence and documents), 세금 부과없는 저가의 적송품 (Category 2 - Low value consignments for which no duties and taxes are collected), 세금 부과되는 저가의 적송품(Category 3 - Low value dutiable consignments), 고가 적송품(Category 4 - High value consignments)으로 4개의 범주로 구분하고¹⁵⁾ 특송물품 고시는 목록통관특송물품, 간이신고특송물품, 일반신고특송물품으로 나누고 있다.¹⁶⁾

적송품의 구분기준은 적송품의 가격과 세금 부과 여부 등으로 즉시반출가이드라인과 특송물품 고시의 구분이 유사하게 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적송품의 가격 기준과 관련하여 즉시반출가이드라인 범주 2와 3의 경우 적송품의 가격의 범위를 규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특송물품 고시에서도 목록통관특송물품과 간이통관특송물품의 경우 적송품의 적용가격범위가 설정되어 있는 등 그 분류 자체가 유사함을 확인할 수 있다.

세금부과여부와 관련하여는 즉시반출가이드라인의 범주 2와 특송물품 고시의 목록통관특송물품 모두 면세대상물품이므로 면세 기준에 따라 동일하게 분류되었으나 범주 3과 간이통관특송물품은 약간 차이가 있다. 즉, 면세와 관련하여서는 관세법 시행규칙 제45조 관세가 면세되는 소액물품 제1항 3호에서 과세가격이 미화 250달러 이하인 물품으로서 견품으로 사용될 것으로 인정되는 물품, 그리고 동 조 2항 1호에서 관세법 제94조 제4호의 규정(우리나라 거주자가 수취하는 소액물품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물품)에 의해 관세가 면세되는 것은 당해 물품의 총과세가격이 15만원 상당액 이하의 물품으로서 자가사용 물품으로 인정되는 것(다만 반복 또는 분할하여 수입되는 물품으로서 관세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의 규정을 통해 간이신고특송물품의 경우(물품가격 미화 100불 초

14) 특송물품수입통관사무처리에관한고시(관세청 고시 제2004-16호, 2004.3.25.), 제2-6조(세관과 특송업체간 협정체결)

15) WCO, Guidelines for the Immediate Release of Consignments by Customs(IRG-Version, 9/10/2002), 4.1, 5.1, 6.1, 7.1.

16) 특송물품수입통관사무처리에관한고시(관세청 고시 제2004-16호, 2004.3.25.), 제3-1조(신고구분)

과 2,000불 이하) 면세되는 물품도 있고 세금이 부과되는 물품도 있어 WCO 즉시반출가이드라인의 범주 3인 세금 부과되는 저가의 적송품과는 약간의 차이가 있다.

〈표 1〉 즉시반출가이드라인과 특송물품 고시상의 적송품 구분 비교

특송물품수입통관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WCO 즉시반출 가이드라인
우편물(서신은 제외) - 관세법 제3절 우편물(제256조~제261조) - 수입통관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4절 우편물, 제3-4-1조~제3-4-4조)	서신 및 서류(범주 1) - 관세와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 상업적 가치를 갖지 않는 서신과 서류
목록통관특송물품 - 국내거주자가 수취하는 자가사용물품 또는 면세되는 상용견품 중 물품가격이 미화 100불이 하로서 법 제22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세관장 확인대상이 아닌 물품	세금 부과없는 저가의 적송품(범주 2) - 인체물, 맹인을 위한 어떤 형태의 문현, 상업적 인 분량으로 대량공급을 위한 물질 - 관세와 세금적용이 무시될 정도이기 때문에 관세와 세금부과가 면제되거나 포기되는 저가의 적송품 즉, 샘플, 제한가격이하의 부탁하지도 않은 선물 - 적송품 자체에 관세나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 저가품
간이신고특송물품 - 물품가격이 미화 100불 초과 2,000불 이하로서 아래의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물품 ① 수입통관사무처리에 관한고시 제2-1-8조 제2항 제2호, 제4호, 제7호, 제16호에 해당하는 물품 ② 할당·양허관세 신청물품 ③ 법 제83조의 규정에 의한 용도세율 적용 신청물품중 사후관리대상물품 ④ 법 제226조의 규정에 의한 세관장확인대상물품 ⑤ 법 제250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취하 또는 신고각하된 후 다시 수입신고하는 물품. 다만, 제4-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해 통관보류된 물품은 제외한다. ⑥ 해체·절단 또는 손상·변질 등에 의해 물품의 성상이 변한 물품 ⑦ 이사물품수입통관사무처리에 관한고시 적용 대상 물품 ⑧ 수입신고서 기재사항중 품명·규격·수량·가격 등이 부정확하여 간이신고가 부적당하다고 세관장이 인정하는 물품	세금 부과되는 저가의 적송품(범주 3) - 범주 2에 속하는 적송품의 가격과 관세/세금의 한계를 상회하거나 관세와 세금을 면제하거나 포기할 수 없는 적송품
일반신고특송물품 - 물품가격이 미화 2,000불을 초과하는 물품과 제2호 각목에 해당하는 물품	고가의 적송품(범주 4) - 위의 범주 1, 2, 3에 속하지 않는 적송품이 포함된다. 그리고 제한물품을 포함한 적송품이 포함된다.

3) 반출/통관절차

반출/통관절차와 관련해서는 신고의 주체와 신고 서류의 두 가지 측면에서 비교할 수 있는데 먼저 신고의 주체측면에서 즉시반출가이드라인의 경우는 운영업자가 신고하는 반면¹⁷⁾, 특송물품 고시의 경우 목록통관은 특송업체가 신고하고,¹⁸⁾ 간이통관 및 일반특송물품의 통관은 화주를 대리한 관세사에 의해 주로 신고되고 있어 즉시반출가이드라인과 다소 상이하다.

한편 제출신고서류 측면에서는 즉시반출가이드라인의 범주 2의 경우 화주(송화인)의 세관가격신고서¹⁹⁾, 통합신고서(a consolidated declaration)(적하목록, 운송장, 화물신고서 또는 그러한 품목의 목록), 간이화물신고서(simplified Goods declaration) 등을 통관/즉시반출조건으로 규정하고 있고²⁰⁾ 특송물품 고시의 목록통관특송물품의 경우는 당해 적송품의 가격, 중량 등이 표시되어 있는 통관목록과 전자서류에 의하도록 하고 있다.²¹⁾

그리고 범주 3의 경우 통관과 동시에 즉시반출(immediate release with simultaneous clearance)과 즉시반출 후 통관(immediate release with subsequent clearance)이 가능하다.

통관과 동시에 즉시반출되는 경우는 사전에 세관에서 요구하는 정보를 제공하고 화물도착 전에 세관에서 요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간이화물신고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으며 즉시반출 후 통관되는 경우는 운영업자나 그의 대리인에 의해 준비되는 적하목록/운송장 또는 목록 또는 세관에 의해 요구되는 정보를 담고 있는 잠정신고서(a provisional declaration)가 세관에 제시되어야 하며 이 절차 하에서 반출된 모든 제품의 세부사항을 담고 있는 주기적 화물신고서이기도 한 간이화물신고서가 특정기간 내에 세관에 제시되어야 한다.²²⁾

특송물품 고시의 간이신고특송물품의 경우는 검사대상이 아닌 경우 첨부서류 없이 전자서류에 의해 수입신고(특송 P/L 신고)되며 당해 신고의 내용은 일반 P/L 신고에 비해 간이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다만, 간이신고 C/S시스템과 수작업에 의해 검사대상으로 선별된 물품은 수입신고서에 송품장 등 가격자료를 첨부하여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또한 세관과 협정체결을 하지 아니한 특송업체의 경우는 간이신고특송물품이라 하더라도 일반수입신고절차에 따르도록 하고 있다.²³⁾

이상의 특송물품 고시의 목록통관특송물품과 간이신고특송물품의 경우는 즉시반출가이드라인의 범주2, 3의 내용을 따르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²⁴⁾

17) WCO, Guidelines for the Immediate Release of Consignments by Customs(IRG-Version, 9/10/2002), 9.1.

18) 특송물품수입통관사무처리에관한고시(관세청 고시 제2004-16호, 2004.3.25.) 제3-2조 1항

19) 내용과 가격에 대한 화주/송화인의 신고서는 관세와 세금의 유보나 산출을 위해 그리고 관련되는 적송품의 올바른 범주를 확인하기 위하여 세관에 의해 인수될 수 있으며 그러한 신고서의 인수는 관세와 세금이 부과되지 않고 제한 또는 금지품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서신과 서류(범주 1), 부과될 세금이나 관세가 없는 저가품(범주 2)으로 제한된다. 수입국의 수입업자 또는 그 대리인, 운영업자는 송화인의 신고서의 내용과 가격을 입증하는 것을 요구받을 수 있다.(WCO, Guidelines for the Immediate Release of Consignments by Customs, 10.1.~3.)

20) WCO, Guidelines for the Immediate Release of Consignments by Customs(IRG-Version, 9/10/2002), 5.6.

21) 특송물품수입통관사무처리에관한고시(관세청 고시 제2004-16호, 2004.3.25.) 제3-2조 1항, 별지제4호서식

22) WCO, Guidelines for the Immediate Release of Consignments by Customs(IRG-Version, 9/10/2002), 6.5, 6.6.

23) 특송물품수입통관사무처리에관한고시(관세청 고시 제2004-16호, 2004.3.25.) 제3-2조 2, 3항

그러나 범주 4의 경우 일반적인 반출과 통관절차를 적용하되 세관에 의해 요구되는 잠정적 또는 간이화물신고서 또는 최소정보를 담고 있는 송장을 세관에 제출하는 방법도 이용가능 하도록 하고 있는 반면²⁵⁾ 특송물품 고시의 일반신고특송물품의 경우는 일반수입물품과 동일하게 처리되고 있어 일반신고특송물품에 대한 특별절차를 허용하고 있지 않아 즉시반출가이드라인과는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²⁶⁾

4) 적송품의 검사

즉시반출가이드라인은 적송품의 검사와 관련하여 위험관리기법에 기초한 검사를 수행하도록 하고 있으며 모든 특송물품에 대한 검사권한을 인정하고 있다. 즉, 세관은 세관이 집행해야 할 책임이 있는 법과 규칙이 준수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수입, 수출, 세관통과, 환적과 같은 절차에 관계없이 모든 적송품을 검사할 권한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이를 위해 세관은 필수적으로 모든 적송품을 검사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위험관리기법을 기초로 검사를 수행해야 한다.²⁷⁾

한편 특송물품 고시에서는 검사와 관련된 사항이 보다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다. 기본적으로 특송업체가 먼저 통관장에 반입된 모든 물품을 즉시로 자체 X-Ray 검사를 실시하게 되고 목록통관특송물품과 간이신고특송물품·일반신고특송물품을 구분하여 복수판독한다. 그리고 세관은 목록통관특송물품의 경우 목록통관특송물품검사대상선별시스템(목록통관 C/S 시스템)에 의한 전산선별과 통관목록 심사에 의한 수작업 선별로 검사대상을 선별하고 간이신고특송물품의 경우 간이신고특송물품검사대상선별시스템(간이신고 C/S 시스템)에 의한 전산선별과 간이신고 목록화면을 통한 수작업 선별로 검사대상을 선별하며 일반신고특송물품의 경우 일반수입물품의 절차와 동일하게 처리하고 있다.²⁸⁾

따라서 적송품의 검사는 위험관리기법에 기초하여 검사를 실시한다는 점에서 특송물품 고시가 즉시반출가이드라인의 원칙을 따르고 있으나 검사의 주체가 즉시반출가이드라인의 경우 세관이 주체가 되어 검사하게 되나 특송물품 고시의 경우 특송업체가 먼저 X-Ray검사하고 세관이 선별시스템에 의해 검사하는 두 단계를 거치게 하고 있다.

5) 납세의 보증

관세 및 제세금의 지급 보증과 관련하여 즉시반출가이드라인의 경우 관세 및 제세금이 부과되는 범주 3의 즉시반출 후 통관되는 물품²⁹⁾과 범주 4의 적송품이 반출 허용되기 위해서는 관세와 세금의 지

24) 일본의 경우 특송화물로서 과세가격 20만엔 이하의 물품의 경우 수입신고시 소액화물간이통관 취급을 받아 간이한 방법으로 수입신고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수입신고서 Airwaybill이나 invoice로 수입신고서를 가름할 수 있다. (<http://www.customs.or.kr> “일본의 국제우편물 및 특송화물 통관제도”, 2004.1.14.)

25) WCO, Guidelines for the Immediate Release of Consignments by Customs(IRG-Version, 9/10/2002), 7.3.

26) 특송물품수입통관사무처리에관한고시(관세청 고시 제2004-16호, 2004.3.25.) 제3-2조 3항

27) WCO, Guidelines for the Immediate Release of Consignments by Customs(IRG-Version, 9/10/2002), 12.1, 12.2.

28) 특송물품수입통관사무처리에관한고시(관세청 고시 제2004-16호, 2004.3.25.) 제4-1, 4-2조

29) 범주 3의 경우 통관과 동시에 즉시반출과 즉시반출 후 통관으로 통관절차가 나누어지며 통관과 동시에 즉시반출되는 적송품의 경우는 통관과 동시에 즉시반출이 허용되기 위해서는 모든 관세와 제세금을 지불하여야 한다. 후불조건이 허

급을 보장하기 위한 적절한 재정보증이 세관에 제시되어야 한다.³⁰⁾

특송물품 고시에서는 자기명의로 운송한 간이신고특송물품 및 일반신고특송물품으로서 수입신고서 “관세사 기재란”에 당해 특송업체의 상호가 기재된 물품의 경우 납세보증서와 담보물을 통관지세관장에게 제출하여 특송업체가 납세를 보증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³¹⁾

일반적으로 관세 및 제세금이 부과되는 적송품의 경우 관세 등을 납부하거나 납세보증을 통해 반출/통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이러한 관행이 즉시반출가이드라인과 특송물품 고시에도 그대로 적용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6) 통관장의 지정 및 비용부담

즉시반출가이드라인은 세관이 적송품의 반출/통관을 위해 통관장을 지정할 수 있으며 통관장으로 사용되는 시설과 세관원의 파출 등이 필요한 경우 그에 수반되는 기타 비용을 운영업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통관장의 경우에, 특히 세관/운영업자 공동시설의 경우를 포함하여 운영업자는 세관으로부터 규정된 시설(대지, 시설, 공급품, 적절한 물리적 안전)을 무료로 제공하도록 요구받을 수 있다. 세관에 의해 부과되어지는 어떠한 비용도 서비스가 제공되는 대략적인 비용범위내로 제한될 것이다.³²⁾

특송물품 고시의 경우도 세관장이 특송업체별로 통관장을 지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세관장과 협정을 체결한 특송업체는 등록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물품을 칼라로 정확히 판독할 수 있는 X-Ray 투시기를 통관장에 설치하고, X-Ray 검사업무를 전담하는 복수의 판독요원을 배치하여 특송물을 자체 검사하도록 하고 그렇지 못할 경우 업체 단독 또는 동일한 사정에 있는 업체 공동으로 X-Ray 투시기를 임차하여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자체 전담 판독요원 1명과 X-Ray 투시기를 임대한자의 사용인 중 X-Ray 검사 능력이 있는 1명 등 2명이 복수판독하도록 하고 있으며 다만, 세관장이 부득이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세관 직원을 투입하여 업체의 판독직원과 함께 복수판독할 수 있다. 또한 세관장은 통관장에 특송물품만을 처리하는 전담반을 지정하여 파출근무를 시킬 수 있고 이 경우 특송업체는 세관에 시설 및 장비를 무료로 제공하고, 시설 및 장비의 운영에 관한 비용을 부담하도록 하고 있다.³³⁾

따라서 통관장의 지정과 그와 관련된 비용을 운영업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도록 한 즉시반출가이드라인의 규정을 특송물품 고시가 반영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용될 수 있다.

30) WCO, Guidelines for the Immediate Release of Consignments by Customs(IRG-Version, 9/10/2002), 6.6, 7.3.

31) 특송물품수입통관사무처리에관한고시(관세청 고시 제2004-16호, 2004.3.25.) 제5-1조(납세보증) 1, 2항

32) WCO, Guidelines for the Immediate Release of Consignments by Customs(IRG-Version, 9/10/2002), 13, 14.

33) 특송물품수입통관사무처리에관한고시(관세청 고시 제2004-16호, 2004.3.25.) 제2-7조

2. 주요국과의 비교를 통한 분석

1) 미국 특송물품의 수입통관시스템

(1) 특송업체의 정의

미국의 특송화물운영업자 또는 운송인(Express consignment operator or carrier)은 화물의 핵심에서부터 배송에 이르는 전과정을 면밀하게 통합된 관리체계하에서 복합운송을 포함한 어떠한 운송수단을 통해 특급상업서비스(special express commercial service)를 제공하는 자이다.

이들의 서비스는 문전운송(door-to-door)을 기반으로 공시된, 신뢰할 만한 정시 배송하에 일반에게 제공되어지며 특송화물운영업자는 독립운송인과 동일한 방식으로 세관에 대한 책임을 부담한다.³⁴⁾

(2) 일반적인 특송화물의 통관절차

특송화물의 통관절차를 언급하기 전에 우선 미국의 일반적인 수입통관절차를 간단히 언급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한국의 수입통관절차와는 상이하기 때문에 한국특송화물수입통관과 미국의 특송화물수입통관을 비교하기 위해서는 미국의 일반적인 수입통관절차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미국의 일반적인 수입통관절차는 한국과는 달리 Entry, Entry Summary, Liquidation의 세 단계로 구분된다. 우선 당해 화물을 적재한 선박 또는 항공기가 미국 세관영역에 도착 후 5 근무일 이내에 Entry(Customs From 3461)를 제출해야 한다. Entry는 수입의 합법성과 제 세금의 징수 가능성 확보하고 수입통계 작성을 목적으로 수입물품에 대한 적법성 등의 심사를 거쳐 물품이 반출되는 제반절차이다. 다음으로 반출허가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이루어지는 Entry Summary는 물품을 반출한 후 추정된 세액을 납부하고 해당 서식(Customs From 7501) 및 근거서류인 상품송장 등을 지정된 세관으로 제출하는 절차이다. 마지막으로 물품통관일로부터 1년 이내에 이루어지는 Liquidation은 세관 당국이 심사를 거쳐 관세 등 제세를 최종 확정하는 절차로 세관의 심사 및 사후조치 절차이다.

그러면 특송화물의 통관절차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통관사전 준비단계로 특송화물운영업자와 운송인은 모든 수입화물에 대하여 화물도착이전에 ① 화물의 원산지, ② 송화인명, 주소, 국적, ③ 최종수화인 명, 주소, ④ 화물의 명세와 조건, HTSUS(the Harmonized Tariff Schedule of the United States ; 미국관세상품목록표) 소표제번호(subheading number)³⁵⁾, ⑤ 수량, ⑥ 중량, ⑦ 가격과 같은 적하목록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³⁶⁾ 그리고 화물이 hub³⁷⁾나

34) CFR(Revised as of April 1, 2004) Sec. 128.1

35) ① 만약 상품이 Sec. 128.25(정식통관절차)에서 제공되는 바와 같이 정식으로 통관(entry)이 요구되는 경우와 ② 상품이 Sec. 128.24(비정규적 통관절차)에서 제공하는 것과 같은 비정규적인 통관절차에 적합하고 비정규적인 통관절차에 의해 반입되어진다면 그러나 Sec. 128.24(e)에서 제공되는 것처럼 선적지에서 소매기가 200불을 초과하지 않고 하루에 한사람에 의해 수입된 적송품으로 구성되어 관세등의 면제로 통과되지 않을 수도 있는 경우에 대해 정보가 필요하다.

36) CFR(Revised as of April 1, 2004) Sec. 128.21(a)

37) 특송화물의 반출, 검사, 통관신고서전송을 위해 항구세관장(port director)에 의해 승인된 세관운영시간 이외에 정상적

특송화물 운송인 시설(Express consignment carrier facility)³⁸⁾에 도착한 후 선적품의 원산지별로 구분하게 된다. 이때 사전제출 적하목록 정보는 원산지에 의해 구분된 화물과 함께 제공되어진다.³⁹⁾

둘째, Entry 단계로 USD2,000 이상은 정상적인 통관절차(formal entry)로 통관이 이루어지게 되므로 이하에서는 USD2,000 이하의 선적품에 적용되는 비정규적인 통관절차(informal entry)만 설명하겠다. USD2,000 이하의 선적품에 적용되는 비정규적인 통관절차에는 금지품이나 제한품, 그리고 퀴터나 기타 수량제한에 의한 제품 등을 적용되지 않는다.⁴⁰⁾

USD2,000 이하의 선적품에 적용되는 비정규적인 통관절차는 허브나 특송화물 운송인 시설에서의 작업 개시 전에 적절히 수정된 세관양식 3461(Entry/Immediate Delivery)을 제출하게 된다. 비정규적인 통관절차를 행할 수 있는 당사자⁴¹⁾는 다른 관리서류 대신으로 위에서 언급한 사전적하목록이나 송장사본을 제출할 수 있다.⁴²⁾

비정규적인 통관절차를 적용받을 수 있는 적송품의 경우 선택적으로 비행기편당 또는 일일 기준으로 세관양식 3461(Entry/Immediate Delivery)을 제출할 수도 있다. 이때는 상업송장이나 사전적하목록과 항구세관장에 의해 필요할 수 있는 통관번호, 기타 정보를 담고 있는 세관양식 3461이 첨부되게 된다. 여러 물품이 한건으로 신고될 경우 그 사실을 세관양식 3461에 기록해야 한다.⁴³⁾

셋째, Entry Summary 단계로 물품의 반출후 10일 이내에 Entry Summary(세관 양식 7501)가 적절한 양식에 따라 제시되어야 하며 평가된 관세를 납부해야 한다.⁴⁴⁾ 그러나 USD200 이하의 적송품은 관세등 제세금의 부과 없이 통관될 수 있다. 만약 사전 적하목록이 Entry서류로 사용되어 진다면 USD200 이하의 선적품은 적하목록상에서 USD200 이상의 선적품과 분리되어야 한다. 만약 사전적하목록이 Entry서류로 사용되어 진다면 HTSUS 소표번호와 Entry Summary는 필요하지 않다.⁴⁵⁾

(3) 한국 특송물품 통관제도와의 비교

한국 특송물품수입통관제도와 미국의 경우를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

으로 작동하는 분리되고 특별하고 단일 목적을 위한 시설

38) 특송화물의 반출과 검사를 위해 항구세관장에 의해 승인된 독립된 또는 공동의 특별 시설

39) CFR(Revised as of April 1, 2004) Sec. 128.21(b)

40) CFR(Revised as of April 1, 2004) Sec. 128.24(a)

41) Sec.143.26 비정규적인 통관을 행할 수 있는 당사자

(a) USD200에서 USD2,000 사이의 선적품

19 U.S.C. 1498하의 비정규적인 통관이 가능한 USD200에서 USD2,000사이의 선적품은 화주나 매수인에 의해, 또는 화주, 매수인에 의해 지명될 때는 수화인, 관세사에 의해 상당한 주의를 가지고 통관되어질 수 있다.

(b) USD200이하의 선적품

19 U.S.C. 1498하의 비정규적인 통관이 가능하고 19 U.S.C. 1321(a)(2)에서의 요구조건에 맞는 USD200이하의 선적품은 화주나 매수인에 의해, 또는 화주, 매수인에 의해 지명될 때는 수화인, 관세사에 의해 상당한 주의를 가지고 통관되어질 수 있다.

42) CFR(Revised as of April 1, 2004) Sec. 128.24(b)

43) CFR(Revised as of April 1, 2004) Sec. 128.24(c)

44) CFR(Revised as of April 1, 2004) Sec. 128.24(d)

45) CFR(Revised as of April 1, 2004) Sec. 128.24(e)

첫째, 특송품의 분류와 관련하여 한국에서는 목록통관특송물품, 간이신고특송물품, 일반신고특송물품으로 나누고 있는 반면 미국의 경우는 적송품의 가격이 USD2,000를 기준으로 정규적인 절차를 적용받는 물품과 비정규적인 통관절차를 적용받는 물품으로 나누고 있으며 비정규적인 통관절차를 적용받는 물품 중 USD200 이하 물품과 USD200과 USD2,000 사이의 물품으로 다시 나누어져 있다.

따라서 적송품의 구분기준을 가격에 두고 있다는 점에서 한국의 적송품 구분과 유사하다.

둘째, 신고의 주체측면에서는 한국의 목록통관특송물품의 경우는 특송업체가 신고할 수 있도록 한 반면 미국의 경우 비정규적인 통관절차가 적용되는 USD2,000 이하의 특송품에 대하여도 운송인이 신고하지는 않는다.

셋째, 신고서류측면에서는 한국의 목록통관특송물품과 간이신고특송물품의 경우는 일반신고에 비해 간이하게 신고하고 일반신고특송물품의 경우는 일반수입물품과 동일하게 처리하였다. 미국의 경우도 한국과 유사하게 USD2,000 이상의 물품은 일반수입물품과 동일하게 처리하고 USD200 이하는 사전적 하목록이 Entry 서류를 대체하고 Entry Summary는 필요하지 않으며 USD200에서 USD2,000 사이의 특송물품의 경우도 사전적하목록이나 송장사본으로 Entry서류를 대체하도록 하고 있어 간이하게 신고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넷째, 납세의 보증측면에서 미국에서는 Customs Bond제도가 있는데 이는 수입자와 보험사, 기타 법인체의 연대보증으로 보증인은 수입자가 미국 정부에 대한 계약상 의무이행을 보증하거나 불이행시 수입자와 연대 배상할 책임을 지는 것이다. 이때 계약상 의무란 물품을 세관통제구역으로부터 반출하는 대신 Entry Summary를 정시에 하며, 추가적인 관세 및 제세의 부담을 충실히 하고, 위법물품은 세관에 재반입한다는 것 등이다.⁴⁶⁾ 따라서 미국의 Customs Bond는 단순히 납세의 보증만을 의미하지는 않는다는 것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미국의 경우는 일반적으로 관세 등의 정산이 나중에 이루어지므로 Entry 제출과 함께 물품의 반출을 허가받으려면 수입자는 담보(entry bonds)를 세관에 제공하여야 한다. 특송물품의 경우 특송화물운영업자 또는 운송인은 세관에 의해 국제운송으로 확인되고 보세화물운송인으로 승인되어야 하며 또한 세관의 통제하에 화물의 운송, 보관 뿐만 아니라 화물의 통관 및 수입과 관련된 세관요구사항을 따르는 것을 보증하기 위한 세관양식 301(CUSTOMS BOND)을 제출해야 한다.⁴⁷⁾ 그러나 USD2,000 이하인 화물은 비정규적인 신고로 간주되어 담보가 필요없다.

한국의 간이신고특송물품과 일반신고특송물품의 경우는 특송업체가 납세를 보증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미국의 경우도 USD2,000 이상의 경우 특송업체가 Customs Bond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유사한 측면이 있다.

기타 특송품에 대한 편의제공을 위한 세관과 특송업체간의 상호협정체결 규정이나 별도로 특송물품에 대한 검사과정, 통관장의 지정 및 비용부담과 같은 규정은 19 CFR 128 Express Consignments에 별

46) 한국관세무역연구원, 「WCO 교토협약에서 권고하는 선진통관제도의 합리적 도입방안」, 2001.3, p.38.

47) CFR(Revised as of April 1, 2004) Sec. 128.22

도로 규정하지 않고 있다.

2) 일본 특송물품의 수입통관시스템

(1) 특송물품의 정의와 특송화물의 통관절차

일본의 경우 특송물품을 운송하는 업을 국제택배편이란 용어로 사용하고 있으며 이는 다시 이동화물의 형태에 따라 쿠리에(Courier)와 스몰 패키지 배송화물(Small Package Delivery) 두 종류로 나눠진다. 쿠리에는 선하증권, 은행간의 결제서류, 계약서, 설계도, 입찰서류 등의 상업서류와 통관수속이 간단한 서적류 등으로 집화, 통관, 국제수송, 배송을 일체화하고 알기 쉬운 운임체계, 정시 및 지정날짜 내의 배송과 같은 서비스 특징을 가지는 반면, 스몰 패키지 배송화물은 쿠리에보다 중량이 나가는 소형화물 서비스로 북미향 상품인 경우 USD250 미만, 타 지역인 경우 20만엔 미만을 대상으로 하며, 화물의 포장형식(높이+세로+가로)이 160cm를 초과해서는 안 되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⁴⁸⁾

특송물품의 수입통관과 관련하여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나 특송화물로서 과세가격 20만엔 이하의 물품의 경우 수입신고시 ‘소액화물간이통관’ 취급을 받아 간이한 방법으로 수입신고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수입신고시 airway bill이나 invoice에 필요한 사항을 추가 기재하는 것으로 수입신고서에 가름할 수 있다. 즉, airway bill이나 invoice에 ‘수입(납세) 신고서’라고 표시하여 2통을 제출하며 수입이 허가된 때에는 1통에 그 취지를 기재하여 신고자에게 교부한다. airway bill이나 invoice의 기재내용이 관세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및 동령 제59조 제1항의 규정⁴⁹⁾에 의해 필요한 내용을 충족하지 않는 때에는 그 부족한 사항을 적당한 곳에 추가로 기재하여야 한다.

소액화물간이통관은 소액수입화물에 대하여 일반수입화물에 비해 간이한 절차를 실시하여 신속한 통관을 도모하려는 것으로 신고자가 이 제도를 희망하지 않는 경우는 일반절차에 따를 수 있다.⁵⁰⁾

과세가격 20만엔 이하의 물품으로서 ‘소액화물간이통관’ 취급으로 수입된 물품에 대하여 NACCS 시스템 상의 검사구분 지정에 의하여 검사를 수행하게 된다.

(2) 한국 특송물품 통관제도와의 비교

일본의 경우 별도로 특송물품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특송물품의 분류, 세관과의 상호협정체결, 납세의 보증, 통관장의 지정 및 비용부담측면에서는 비교할 수 없다. 그러나 일본의 특송화물 중 과세가격 20만엔 이하의 물품의 경우에 ‘소액화물간이통관’ 취급으로 별도로 운영되고 있음으로 이 제도와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신고인 측면에서 일본의 경우 수입신고인은 물품을 수출 또는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세관장에

48) 구경모, “일본의 택배시장 성장과 글로벌화”, 「월간교통」, 교통개발연구원, 2003.12, p.32.

49) 화물의 기호, 번호, 품명, 수량 및 가격, 화물의 원산지 및 적출지, 화물을 적재한 선박 또는 항공기의 명칭 또는 등록 기호, 화물의 장치장소

50) 관세청, 「일본통관제도 해설」, 2004, pp.82-84.

게 신고하도록 되어 있어⁵¹⁾ 소액화물간이통관의 경우도 수입자가 신고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의 경우 목록통관특송물품의 경우는 예외적으로 특송업체가 신고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일본의 경우와는 상이한 측면이 있다.

둘째, 신고서류와 관련하여 일본의 ‘소액화물간이통관’의 경우 airway bill이나 invoice에 필요한 사항을 추가 기재하는 것으로 수입신고서에 갈음할 수 있어 일반수입신고에 비해 간이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한국의 경우도 목록통관특송물품과 간이신고특송물품은 일반신고에 비해 간이하게 신고하고 일반신고특송물품은 일반수입물품과 동일하게 처리하고 있어 소액의 특송화물의 경우 간이한 신고서류를 통해 통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유사하다.

셋째, 특송물품의 검사 측면에서 한국의 경우 특송업체에게 검사를 위임하고 있으나 일본의 경우는 세관의 책임하에 검사를 수행하고 있다. 그러나 일본세관은 전자상거래 등으로 소액화물의 수입이 급증하고 있으나 세관직원의 인력상의 한계 등으로 감시, 단속을 위한 대책 수립에 고심하고 있다.

IV. 한국 특송물품의 수입통관시스템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

1. 한국 특송물품 수입통관시스템의 문제점

앞에서 살펴본 WCO 즉시반출가이드라인, 그리고 미국, 일본과 한국 특송물품 수입통관시스템의 비교를 통하여 몇 가지 다음과 같은 한국 특송물품 수입통관시스템의 개선되어야 할 문제점을 지적할 수 있다.

첫째, 신고의 주체 측면에서 즉시반출가이드라인은 모든 특송물품에 대하여 운영업자가 신고하도록 하고 있으나 미국, 일본의 경우는 별도로 특송업체가 신고할 수 있는 규정은 없다. 한국의 목록통관특송물품의 경우는 특송업체가 수입신고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기타 특송물품은 주로 화주를 대리한 관세사에 의해 통관되고 있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통관업무를 위임받아 수행할 수 있는 자의 자격에 대한 적법성 문제이다. 관세법 제242조에서 수입신고를 할 수 있는 주체를 화주 또는 관세사, 관세사법인, 통관취급법인의 명의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관세사법 제3조에서도 관세사, 관세사법인, 통관취급법인이 아니면 타인으로부터 의뢰를 받아 통관업을 행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목록통관특송물품의 경우 특송업체가 수입신고하도록 규정된 특송물품고시는 어떠한 법적 근거도 없이 만들어져 시행되고 있어 통관업무의 위임에 대한 적법성 문제가 발생한다.

둘째, 특송물품의 분류측면에서 한국, 미국, 일본, 즉시반출가이드라인 모두 주로 가격을 기준으로 특송물을 분류하고 있으며 분류기준이 되는 가격의 범위도 비슷한 수준에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⁵²⁾

51) 일본 관세법 제67조

따라서 특송물품의 가격에 의한 분류 범위는 주요국과 비슷한 수준이므로 특별히 문제가 되지 않으나 2003년 8월부터 목록통관기준이 USD60 이하에서 USD100 이하로, 간이신고특송물품은 USD600 이하에서 USD2,000 이하로 상향조정되어 간이한 절차를 거치게 되는 특송물품이 급증하여 그에 대한 효과적인 관리에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간이통관의 경우 2003년 1월에서 7월사이 일평균 통관건수가 6백건이었으나 기준이 상향조정된 8월에서 12월까지 일평균 통관건수가 1천건으로 늘어났으며 금액면에서는 일평균 약 11만달러에서 약 35만달러로 급증한 것을 <표 2>를 통하여 확인할 수 있다.⁵³⁾

<표 2> 특송물품 연도별 통관 현황

(단위: 천건, 천USD)

구 分	목록통관		간이통관		일반통관		합계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01년	1,244	23,554	183	39,326	140	233,390	1,567	296,270
'02년	1,762	32,891	195	36,454	185	349,011	2,142	418,356
'03년	2,192	38,761	276	76,982	187	362,137	2,655	477,880
'03.1~7월 (일평균)	1,247 (5.9)	22,137 (104.4)	124 (0.6)	23,573 (111.2)	113 (0.5)	217,074 (1,024)	1,484 (7.0)	262,784 (1,239.6)
'03.8~12월 (일평균)	945 (6.2)	16,624 (108.6)	152 (1.0)	53,409 (349.1)	74 (0.5)	145,063 (948)	1,171 (7.6)	215,096 (1,405.7)

* 연도별 증가비율(건수) : '01년 28%, '02년 37%, '03년 24%

자료 : 관세청 특수통관과 자료

셋째, 신고서류측면에서 즉시반출가이드라인은 모든 특송물품에 대하여 다소 차이가 있으나 간이한 방법으로 신고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반면 한국, 미국, 일본의 경우는 USD2,000 이하, 20만엔 이하의 특송물품에 대하여만 간이신고방법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의 목록통관특송물품의 경우 특송업체가 제출하는 통관목록과 전자서류에 의해 수입신고되고 있어 당해 특송물품의 가격을 확인할 수 있는 송품장 등 가격자료가 없어서 신속통관을 위해 가격을 저평가하여 신고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또한 간이신고특송물품의 경우도 검사대상으로 선별되지 않는 경우 첨부 서류없이 전자서류에 의한 수입신고로 신고되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가격자료가 첨부되지 않아 저평가 신고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저평가 신고할 경우 단순히 부당한 신속통관의 혜택 뿐만 아니라 세액 탈루의 문제까지 발

52) 가격에 의한 특송물품의 분류구간이 비슷한 수준에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한국	미국	일본
USD100이하	USD200이하	-
USD100~2,000이하	USD200~2,000이하	20만엔 이하(약 USD1,818)
USD2,000이상	USD2,000이상	-

53) 관세청 특수통관과 자료

생될 가능성이 높게 된다.

넷째, 적송품의 검사측면에서 즉시반출가이드라인은 세관에서 위험관리기법을 활용하여 검사를 수행하도록 제시하고 있으며 일본의 경우도 세관에서 직접 검사를 수행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의 경우 일차적으로 특송업체가 모든 특송물품에 대하여 X-Ray 검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세관에서는 위험관리기법을 활용한 목록통관C/S시스템, 간이신고C/S시스템을 통한 전산선별과 통관목록 심사에 의한 수작업 선별을 실시하고 있다.

여기서 문제점은 특송업체의 X-Ray검사요원들의 전문성 결여문제를 들 수 있다. 전문적인 노하우를 가지고 있지 않는 한 X-Ray검사를 통한 우범물품, 밀수품의 선별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없으며 공무원에 비해 공익성에 대한 인식정도가 결여되어 보다 성실한 판독을 기대하기 어렵다. 또한 세관의 수작업선별도 제한된 세관인원으로 수많은 특송물품을 선별하는데는 무리가 있다.

2. 한국 특송물품 수입통관시스템의 개선방안

특송물품의 생명인 신속한 화물인도를 위해 일반수입화물과 구별하여 특별한 수입통관절차를 허용하고 있다. 이러한 신속화물 흐름에 중점을 둔 특송화물의 수입통관시스템은 통관의 두 축 중 하나인 통관의 적법성 확보 및 세수확보에는 소홀하게 되는 문제를 갖게 되어 효과적인 특송물품의 관리에 문제점을 들어내게 된다.

이를 극복하고 효과적인 특송물품 수입통관시스템이 될 수 있는 개선방안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통관업무 위임의 적법성 문제와 관련하여 목록통관특송물품의 통관을 특송업체가 가능하도록 한 것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으므로 관세법이나 관세사법의 정비를 통해 이를 수용하도록 하거나 관세사를 활용하여 통관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할 것이다.

둘째, 부당가격신고문제로 목록통관특송물품의 경우 특송업체가 작성하는 통관목록으로 수입통관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가격을 저평가하여 목록통관특송물품으로 분류하여 신고하거나 분할하여 신고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목록통관특송물품의 경우도 송장등 가격정보가 담긴 서류를 세관에 전송하도록 하여 이 같은 문제를 보완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미국, 일본의 경우 송장이나 운송장 사본으로 신고하도록 하고 있어 가격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셋째, 특송업체의 특송화물 X-Ray 검사요원의 전문성 결여문제로 특송업체의 X-Ray검사요원의 전문성을 제고하여 효과적인 위해, 우범, 밀수물품 판독이 가능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관세청 주관의 X-Ray 판독 관련 연수교육 등의 일정한 과정을 이수한 자만이 판독할 수 있도록 제도화하는 방법이 가능할 것이다.

넷째, 세관의 검사대상물품 선별상의 문제로 이를 해결하기 위해 특송물품 C/S시스템의 효과적인 운용이 필요하다. 즉, 특송물품의 최종검사는 C/S시스템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C/S시스템의 효과적인 작동이 없이는 특송물품의 적절한 관리가 불가능하다. 따라서 효율적인 검사대상 선별을 위해

보다 축적된 사례와 자료 등 정보를 수집, 활용하여 C/S가 효과적으로 작동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V. 결 론

전자상거래와 항공운송의 발달로 특송물품이 과거처럼 간단한 견품이나 상업서류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가격과 중량면에서 과거보다 다양한 물품으로 그 범위가 확대되고 있으며 물동량도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하에서 급증한 특송물품의 통관을 일반통관절차를 거쳐 반출하게 된다면 세관에 상당한 업무부담을 줄 뿐만 아니라 신속한 물류흐름이 생명인 특송물품의 신속성을 저해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특송물품을 위한 특별절차를 마련할 필요가 있어 한국에서는 특송물품수입신고사무처리에 관한 고시를 마련하여 운영하고 있다. 통관은 신속통관과 사회 안전성 확보 및 적법성 확보라는 상반된 요구를 수행해야 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으나 특송물품의 범위 확대 및 신속통관을 위한 편의 제공에 중점을 두게 된다면 완화된 제도의 역이용할 가능성, 급증한 특송물품의 신속통관에 따른 통관관련자의 업무소홀 가능성과 이를 이용한 우범물품의 반입 가능성 증가 등의 문제점이 발생하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신속통관 뿐만 아니라 사회 안전성 확보 및 적법성 확보 모두를 충족시킬 수 있는 균형있는 관세행정이 될 수 있도록 특송물품에 대한 관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최근 WCO에서는 즉시반출가이드라인을 통해 신속통관을 위한 특별절차를 마련하여 각국에 권고하였으며 미 관세청은 9.11테러 이후 다양한 법과 상업데이터베이스와 연결한 자동선별시스템(automated targeting system)을 통해 전송된 사전화물정보를 처리하여 고위험 화물이 미국내에 도착하기 전에 차단하고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특송물품을 포함한 모든 수입 화물에 대한 안전성 확보를 위한 관리를 수행하고 있다.

한국 특송물품 수입통관시스템도 신속통관 뿐만 아니라 수입물품의 안정성 확보 및 적법성 확보에도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다. 즉, 부당가격신고 근절을 위한 신고내용 및 서류의 보완, 특송업체의 X-Ray 관독요원의 자질향상과 특송물품에 대한 보다 효과적인 선별을 위한 특송물품 C/S의 보완 등 특송물품 수입통관시스템의 개선이 필요하다. 이를 통해 성실신고물품에 대해서는 보다 신속한 통관이 보장되고 반면 우범물품 등에 대해서는 보다 철저한 관리가 이루어져 통관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 구경모, “일본의 택배시장 성장과 글로벌화”, 「월간 교통」, 교통개발연구원, 2003.12.
- 관세청, “일본의 국제우편물 및 특송화물 통관제도”, 2004.1.14.(<http://www.customs.go.kr>)
- _____, 「일본관세법 해설(上,下)」, 2002.3.
- _____, 「주요 교역상대국의 통관제도」, 2000.4.
- _____, 「일본통관제도 해설」, 2004.
- 김재철 · 예충열, 「항공화물수송부문의 경쟁력 강화방안」, 교통개발연구원, 2002.11.
- 로지콤, “글로벌 물류기업 국내진출 현황”, 「cargo news」, 2003.6.
- 신동선 · 박명섭 · 백병성, 「전자상거래의 확산에 따른 물류정책의 과제와 방향」, 교통개발연구원, 2001.9.
- 신용덕, “『특송물품수입통관사무처리에관한고시』제정 해설”, 「월간 관세와 무역」, 제35권 (통권 제389호), 한국관세무역연구원, 2003.3.
- 조철휘, “중국 · 일본 택배업계의 현상과 과제”, 「e-로지스틱스」, 2003.8.
- 최철수, “국제항공택배업의 현황”, 「cargo news」, 로지콤, 2003.9.
- 한국관세무역연구원, 「WCO 교토협약에서 권고하는 선진통관제도의 합리적 도입방안」, 2001.3.
- 홍광진, “특송물품의 관리현황과 개선방안”, 「계간 관세사」, 통권131호, 한국관세사회, 2004.1.
- WCO, Guidelines for the Immediate Release of Consignments by Customs, IRG-Version, 2002.10.
- _____, Trade facilitation issues in the DOHA ministerial declaration, Review of GATT articles Article VIII, Communication from the World Customs Organization.
- _____, Immediate Release Guidelines(<http://www.wcoomd.org>)
- 특송물품수입통관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관세청고시 제2004-16호('04.3.25.)
- U.S. Code of Federal Regulations(CFR)
- United States Code(U.S.C.)